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02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5월 21일, 김현기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5년 5월 29일

다. 상정일자: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현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‘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’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(안 제33조제2항제1호).
-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 신설(안 제3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박귀수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‘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고 예산편성·임직원 채용·소송 업무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33조제2항제1호는 ‘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, 안 제33조제3항은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시장과 주무부서 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임.

이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로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조례¹⁾와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현행 조례 제6조(정관)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바, 안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입법경제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, 금번 제331회 정례회에는 본 조례안과 개정 내용이 유사한 7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.

1)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〈市 공기업 개별 조례 및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〉

서울교통공사	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	서울농수산 식품공사	서울시설공단	서울물재생 시설공단	서울 에너지공사	서울시 출자출연기관
제31조 ② ~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 다. 1. 기구 및 정 원에 관한 사항 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 규정 및 퇴직 금규정 등 중 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사장은 제 2항 외에 예 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 한 사항에 대 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. <신설>	제37조 ②~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 다. 1. 기구 및 정 원에 관한 사항 ③ 사장은 제2 항 외에 <u>예산 편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</u> 에 대하여 사전 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. <신설>	제25조 ②~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 다. 1. 재산의 관 리처분에 관 한 규정, 조 직·인력에 관 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 의 제정·개정 및 폐 ③ 사장은 제2 항 외에 <u>예산 편성, 소송 업 무 등 중요한 사항</u> 에 대하여 사전 에 주무부 서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 다. <신설>	제27조 ② ~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 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~ 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<u>예산편성, 인 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 항</u> 에 대하여 사전 에 사업 소관 주무부 서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 다. <신설>	제27조 ② ~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 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~ 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<u>예산편성, 임 직원 채용, 임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</u> 에 대하여 사 전에 주무부 서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 다. <신설>	제33조 ② ~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 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 공사 사장 은 제2항 외 에 <u>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</u> 에 대하여 사 전에 주무부 서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 다. <신설>	제11조 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<u>예산편성, 기 구 및 정원 변 동, 임직원 채 용,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 한 사항</u> 에 대 하여 주무부서 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 다. <신설>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감독) ① (생략)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<신설></u> <u>1.·2. (생략)</u> <u><신설></u>	제33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<u>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u> <u>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u> <u>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임직원 채용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